

학생복지센터 운영 규정

문서번호	BSKS-2-1-44
제정일자	2021.12.22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2

2021.12.22.제정 2022.04.15.개정 소관부서 : 산학처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(이하 "본 대학"이라 한다.)의 학생자치기구 지도 및 자문, 학생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한 학생복지센터(이하 "센터"라고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- 1. 학생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
- 2. 총학생회의 학생복지 활동에 관한 자문과 지도
- 3.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선거에 관한 자문과 지도
- 4. 총학생회비 및 학과 학생회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예·결산 자문
- 5. 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- 6. 기타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

제3조(조직) 센터의 조직은 아래의 각 호와 같다.

- ① 센터장(이하 "센터장"이라고 한다)은 본 대학 교원 또는 일반직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② 센터장은 학생지도 및 복지를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- ③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4조(재정) 센터의 재정은 본 대학 교비 및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.

제 2 장 운영위원회

- 제5조(설치)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 를 두며, 학생지도위원회에서 겸 할 수 있다.
- **제6조(구성)** ①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처장이 되고 센터장, 교무처장, 사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부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 - ③ 위원회에 위원 이외에 간사를 둘 수 있다.
- 제7조(임무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운영계획 및 정책의 수립
 - 2. 규정 제정 및 개정



학생복지센터 운영 규정

	문서번호	BSKS-2-1-44
	제정일자	2021.12.22.
	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	페이지 수	2/2

- 3. 총학생회비 및 학과 학생회비 결산
- 4. 기타 위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8조(회의)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제 3 장 환 류

- **제9조(환류)** 대학 재학생의 복리 향상을 위해 주관부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학생복지 에 대한 결과를 분석 · 평가하고 환류를 실행한다.
 - ① 부서 주관 학생복지 프로그램 수요도 ·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.
 - ② 부서 주관 사업 실행 성과와 부서 및 대학 자체 수요도 · 만족도 조사 분석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, 운영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개선안을 도출한다.
 - ③ 필요시 교직원 연수 및 성과공유회 등의 개최, 교육품질 개선을 위한 환류보고서 등의 작성을 통하여 성과분석 및 개선안, 개선결과 등을 공유할 수 있다.
 - ④ 운영위원회는 개선 실적을 중간 점검하고, 추가 개선안을 제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